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김성희 의원)

의안 번호	20-150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0. 10. .

발의자: 김성희, 강명숙, 김영미, 이민석
이필레, 정혜경, 최은하

1. 개정이유

마포문화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으로 구청장이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 포함)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토록 한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6조)

3. 관계법령: 「민법」 제48조

4. 예산조치: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0. 10. 16. ~ 10. 21.

나. 붙임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 한다)을 무상사용, 수익하거나”를 “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「민법」

제48조(출연재산의 귀속시기)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.

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광경희
연 락 처	02-3153-8534